

	규정 교육품질관리(CQI) 운영 규정	문서번호	TWP-A705
		제정일자	2016. 12. 23.
		개정일자	2025. 10. 14.
		개정번호	4
		페이지	1/4

작성부서	기획예산처	제정일자	2016. 12. 23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승 인
직 책	담 당	교무학생처장	사무처장		총 장
서명					
일자					



규정

문서번호	TWP-A705		
제정일자	2016. 12. 23.		
개정일자	2025. 10. 14.		
내정번호	4	페이지	2/4

	규정	문서번호	TWP-A705
		제정일자	2016. 12. 23.
	교육품질관리(CQI)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25. 10. 14.
		개정번호	4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”이라 한다)의 전학이념, 사명 및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품질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교육수요자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“교육품질관리(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)”란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여건 및 성과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대학 교육 운영의 개선 방안을 도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품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.

제3조(품질관리 항목) ① “교육과정”은 우리 대학에서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내용 등으로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산업체 요구수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적정하게 개발되고 운영되도록 관리되어야 할 주요 항목을 말한다.

② “교육환경”은 우리 대학에서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강좌규모, 실험실습 기자재, 교수의 강의역량, 학습자의 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유무형의 지원을 통하여 교육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관리되어야 할 주요 항목을 말한다.

③ “교육성과”는 우리 대학에서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한 교육의 결과를 측정하여 성취도 수준, 강의평가 결과,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관리하여야 할 주요 항목을 말한다.

제4조(주관부서 및 관리부서) 교육품질관리의 주관부서는 기획예산처로 하며,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과목 교육품질관리(CQI): 교무학생처
2. 학과 교육품질관리(CQI): 교무학생처
3.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교육품질관리(CQI): 교육혁신센터
4. 대학 교육품질관리(CQI): 기획예산처

제5조(교육품질관리위원회) ①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교육품질 개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품질관리위원회(이하 “관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이 되고, 당연직 내부위원은 교무학생처장, 산학입학처장, 사무처장으로 한다.

③ 임명직 내부위원은 총장이 교직원 중에서 임명하고, 외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1인 이상 총장이 위촉한다.

④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과목 교육품질관리(CQI)보고서

	규정	문서번호	TWP-A705
		제정일자	2016. 12. 23.
	교육품질관리(CQI)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25. 10. 14.
		개정번호	4

2. 학과 교육품질관리(CQI) 보고서
 3.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교육품질관리(CQI) 보고서
 4. 대학 교육품질관리(CQI) 보고서
 5. 기타 교육품질관리에 관한 사항
- ⑤ 간사는 직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6조(교육품질관리 실무위원회) ① 교육품질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 품질관리위원회 산하 교육품질관리 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하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육품질관리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실태조사 및 분석자료 수집
 2. 교과(전공, 교양) 교육과정 자체평가 결과 분석
 3.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 결과 분석
 4. 제1호부터 제3호의 자료를 토대로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작성
- ④ 간사는 직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7조(관리절차) ① 교육 품질관리는 교육과정 운영 실태조사 및 분석자료를 수집하여 품질관리 항목을 바탕으로 작성된 교과목, 학과,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교육품질관리(CQI) 보고서를 활용하여 대학 교육품질관리(CQI) 보고서를 작성한다.

② 대학 교육품질관리(CQI) 보고서 작성은 위한 교과목, 학과,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교육품질관리(CQI) 보고서는 관리 부서의 “교육품질관리(CQI) 지침”에 의거하여 계획을 수립, 작성한다.

③ 대학 교육품질관리(CQI)를 위해 실무위원회에서 작성된 대학 교육품질관리(CQI) 보고서와 관리부서에서 작성된 교과목, 학과,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교육품질관리(CQI) 보고서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④ 대학 교육품질 개선 평가는 매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,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8조(사후관리) ① 주관부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품질관리를 위하여 매년 확정된 교육품질관리(CQI)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유한다.

② 교육품질관리(CQI) 보고서에서 분석 도출된 개선 사항은 차년도 교육과정, 교육환경, 교육 성과 등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
	규정	문서번호	TWP-A705
		제정일자	2016. 12. 23.
	교육품질관리(CQI)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25. 10. 14.
		개정번호	4
		페이지	5/4

제9조(경비) 교육품질관리를 위한 위원회 회의 경비는 대학 예산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기타)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